

공

고

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-80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시정명령)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0. 24.

서울전파관리소장

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시정명령)

1. 근거법령

-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(검사·보고 등), 제92조(시정명령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

2. 위반내용 : 기간통신사업자 연간매출액 현황 제출 미이행

3. 처분대상 :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시정명령) 내역참조

4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5. 시정기한 : 2025. 11. 28.

6. 의견서 제출처

- 부서명 :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
(☎02-2680-1752, Fax 02-2680-1758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-43 (궁동)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
7. 유의사항

-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,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시정명령) 내역 >

등록번호	사업자명	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주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제1-01-23-0002호	(주)비츠네트웍스	134111-***1644	박*영	경기도 안양시	연간매출액 현황 자료 미제출 (법 제88조 위반)	시정명령
제1-01-22-0040호	주식회사 파인콜	134811-***9751	유*영	경기도 화성시		
제1-06-16-0002호	(주)라이브정보통신	170111-***0671	이*명	서울시 마포구		
제1-01-14-0007호	주식회사스카이존	280211-***9433	김*성	인천광역시 연수구		